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통합안내서〉

목 차

(교육대상 기관 배포용)

I. 자살예방교육 개요	7
II. 추진개요	
1. 추진배경	10
2. 교육대상	10
3. 교육내용 및 횟수	12
4. 교육방법	14
5. 결과보고	17
III. 자살예방교육 안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20
2.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상	26
3.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30
4. 학생(초·중·고등학교) 대상	35
IV. 부록	
FAQ. 자주묻는 질문	40
<붙임1>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43
<붙임2> 전체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44
<참고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50

목 차

(광역·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배포용)

V. 주요 변경사항

1. 2024년 자살예방교육 주요 변경사항	60
-------------------------------	----

VI. 추진개요

1. 자살예방교육 추진개요	64
----------------------	----

2. 자살예방교육 사업안내	66
----------------------	----

가. 자살예방교육 계획 수립	66
-----------------------	----

나.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69
------------------------------	----

다. 자살예방교육 보급	70
--------------------	----

라.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72
----------------------	----

VII. 부록

FAQ. 자주묻는 질문	74
--------------------	----

<붙임1>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심사 신청서	78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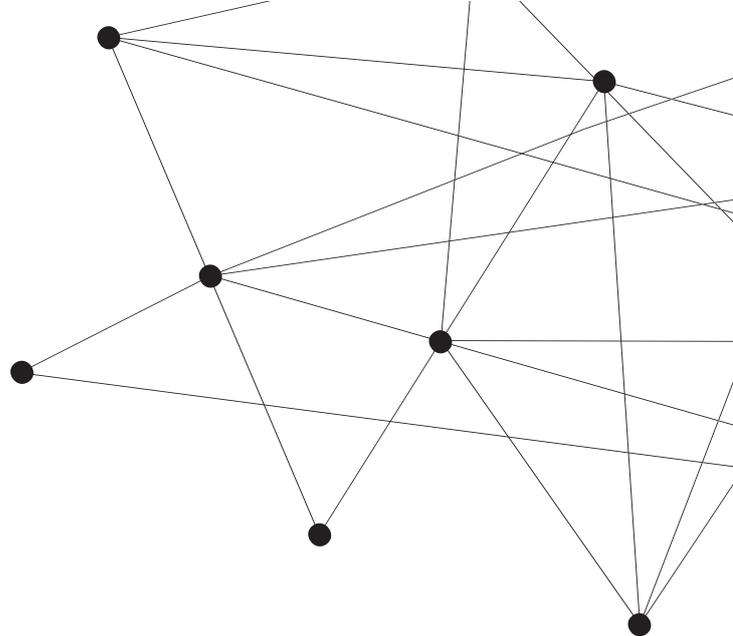
<붙임2>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목록	79
----------------------------	----

<붙임3> 전문강사 양성과정 안내	85
--------------------------	----

<붙임4>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안내	8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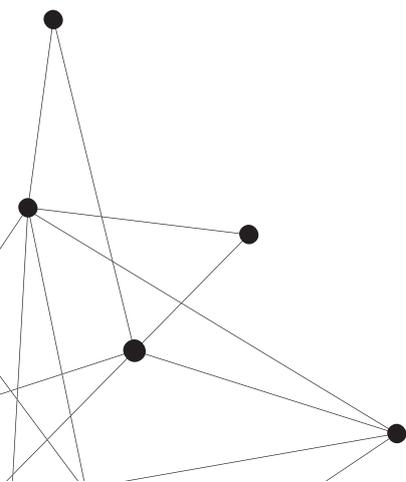
<참고1>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88
-------------------------	----

<참고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89
-------------------------------------	----



교육대상 기관 배포용

2024. 7.



자살예방교육 개요

자살예방교육 개요

□ 교육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 ▶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0조]

- 의무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국가 및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보건복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대상: 대학교,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을 생략 가능)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 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교육대상

- 의무대상: 매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필수 대상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 중앙행정기관 · 입법 · 사법기관 · 국방 · 경찰 · 소방 등
- ▶ 광역 · 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3호)

-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③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교원 · 직원 포함)

④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제2항)

○ 노력대상: 교육 권고 대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제2항)

▶ 각종 대학 및 각종학교

②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

〈기관 내 교육 대상 인원 산정 기준〉

❖ 사업장 내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수로 산정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인원수(보수총액 신고한 근로자)’ 확인 가능

☞ 확인경로 : 근로복지공단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고용보험 적용제의 대상(고용보험법 제10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단,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거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③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시행령 제10조제3항제2호)

3

교육내용 및 횟수

1

교육내용

-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 ▶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살문제와 현황
 -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 주요 교육내용

- 매해 인식개선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1 교육 실시

구분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교육 목표	자신의 심리적, 정신적 안녕과 공동체 안전 확보	자살위기자를 미리 발견하고 대응방법
교육 내용	①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자신과 타인의 가치 인식 ② 심리사회적 문제와 도움요청 - 당면하기 쉬운 심리사회적 문제 - 정신과적 문제인식과 적절한 도움요청 방법 ③ 자기이해와 돌봄 - 다양한 감정 다루기 - 스트레스 관리 및 심신건강 증진 방법	① 자살문제와 현황 ② 자살위험요인, 경고신호 ③ 자살위기 대응기술 - 위기위기자 식별과 지원 - 자살위기자와 대화 방법 - 적절한 전문가 및 자원 연결 - 후속 관리 등

2 교육횟수

-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 의무교육 대상은 '25년부터 교육 결과 제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교육 프로그램

1 대국민용 자살예방교육

각 교육실시 기관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 1
(해당 연령을 고려하여 수강 권고)

구분	(대표)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초등저	초등고	중등	고등	대학생 (청년)	직장인 (성인)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	◎	◎	◎	◎	◎
생명지킴이교육 (보고듣고말하기)				◎	◎	◎	◎

2 보건복지 및 의료분야 서비스 제공인력을 위한 교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관련 인력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수강 권고 (아래 교육 중 택1)

구분	(대표) 프로그램
공통교육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기초편)
분야별 심화교육	청소년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 (심화편)
	성인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 (심화편)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 (심화편)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 전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붙임2)

4

교육방법

※ 자살예방교육은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에 고려하여 교육 실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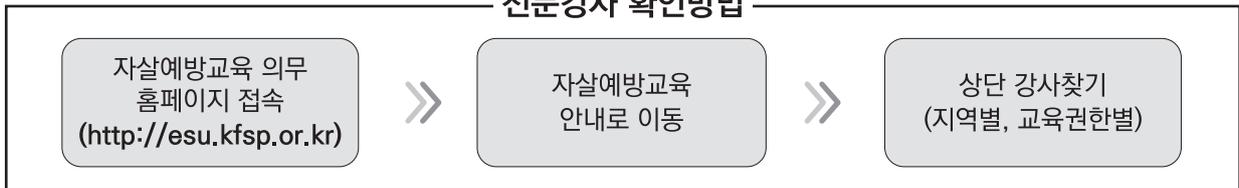
1

집합교육

(1) 전문 또는 기관강사 (붙임1)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전문강사 확인방법



-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개발기관 직접 문의 후 강의 요청 필요)

* 등록교육 :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2) 사내강사

- (교육주체) 내부직원 중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자
- (교육방법) 소속기관 내 교육 대상에게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 실시

※ 단, 사내강사의 경우, 청년·성인 인식개선교육에 한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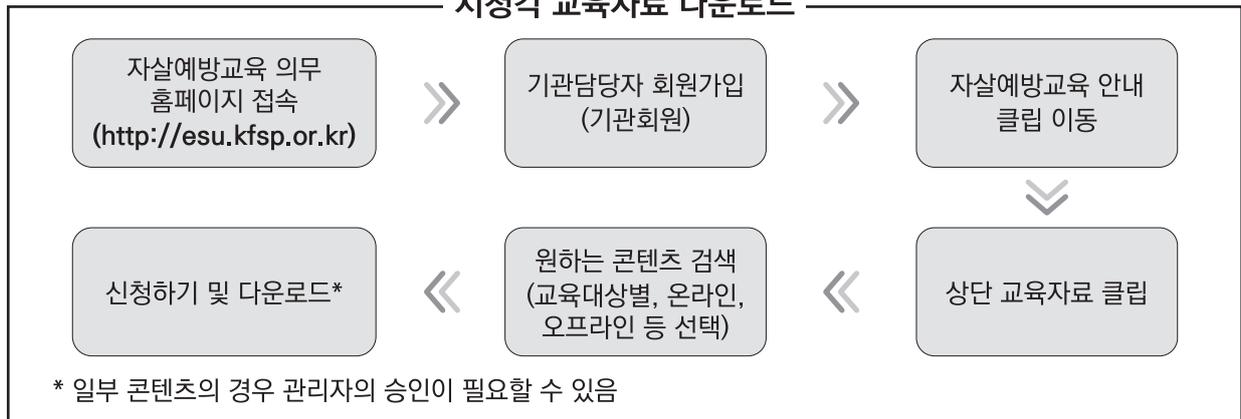
<2024년 사내강사 양성과정(안)>

- (교육일정) 9월~11월 (총 2차 예정)
- (활동범위) 재직 중인 기관 및 단체에 한해 인식개선교육만 강의 가능
- (강사양성과정) 사전 온라인 이론교육(1시간)+대면 실습교육(5시간)
- (자격유지) 수료 후 자격 재직기간까지 (단, 매해 보수교육 수료 필요)

2 시청각교육

-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진행
 -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교육자료(교육영상·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시청각교육은 별도 강사양성과정 없이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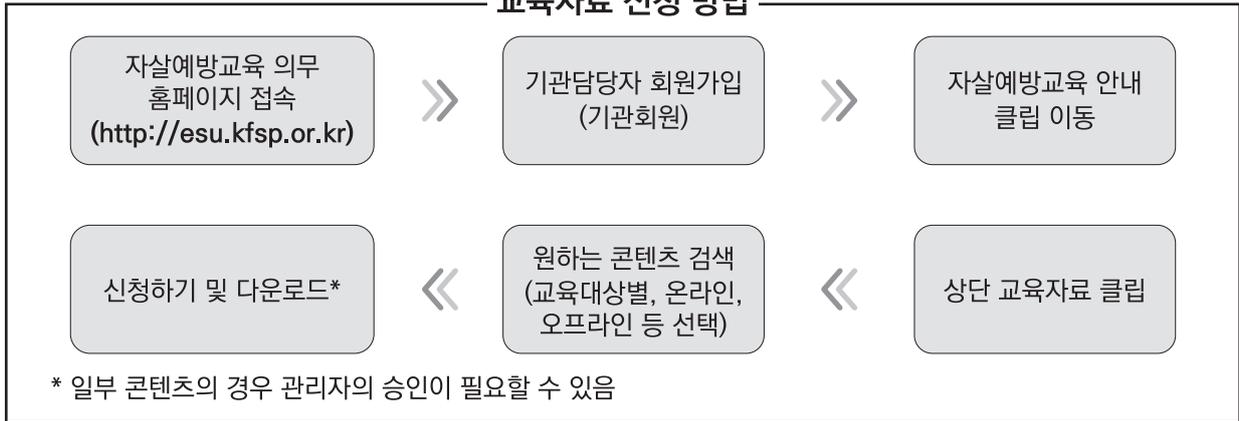
시청각 교육자료 다운로드



3 인터넷 교육

-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 교육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 (1) 기관 내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LMS) 탑재 후 교육 진행

교육자료 신청 방법



(2) 복지부(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LMS) 미구축된 기관의 경우, 복지부(재단) 등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기관명	교육 운영 홈페이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센터	https://edu.kfsp.or.kr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국가·지방직 공무원)	https://e-learning.nhi.go.kr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종사자)	https://logodi.nhi.go.kr

5

결과보고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5

- ▶ ①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에 한하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따라 교육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결과보고 제출 방법

2025년(1월~12월) 교육부터 결과보고, 2026년 1월까지
시스템을 통한 결과보고 필수

○ (결과보고 대상) 교육 의무대상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국방·경찰·소방 등
-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3호)

-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③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제2항)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보고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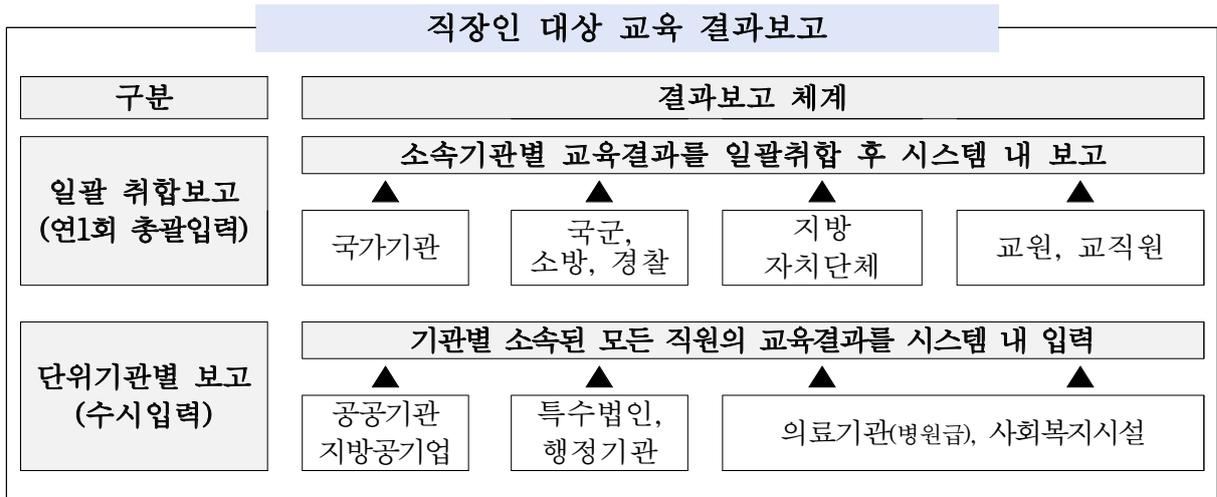
○ (제출방법) '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자살예방교육시스템 : www.edu.kfsp.or.kr

○ (제출기한) 2026년 1월 31일 까지

○ (보고내용) '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 (전체 인원대비 이수자 수)

○ (최종 제출방법) 기관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또는 단위기관별 보고



2 결과보고 상세 방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일괄취합 보고

구분	결과보고 입력 방법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교육실시 결과 및 각 소속기관 교육실시 결과를 중앙단위 기관에서 교육실시 결과 취합 후 통합입력
지방자치단체	자체 및 관할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시 결과 취합 후 통합입력 (시,군,구 기준으로 취합)
국방,경찰,소방	본부(경찰청, 소방청, 각 군별 본부) 이하 기관 모든 교육실시 결과 취합 후 통합입력

○ 공공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 개별기관별 보고

구분	결과보고 입력 방법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사회복지시설, 병원급의료기관	각 기관별 교육 담당자가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직접 입력

자살예방교육 안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조직 포함) 등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방, 경찰, 소방으로 직군(직급)과 상관 없이 모든 공무원 및 모든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 국가기관 : 입법, 사법, 중앙행정조직

- ① 입법조직 :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 ② 사법조직 :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 및 지원
- ③ 중앙행정조직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19부 3처 18청 및 그 소속기관(참고1)

▶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조직, 교육행정조직

- ①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기준으로 광역 시·도, 시·군·구
- ② 교육행정조직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기준에 따른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 포함), 지역교육지원청

▶ 국군, 경찰 및 소방

- ① 국군 :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각군본부, 및 제15조에 따른 각군부대와 기관
※ 병사를 제외한 간부급(장교, 부사관, 군무원) 의무교육 대상
- ② 경찰·소방 : 경찰청·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른 각 기관

2 교육내용 및 횟수

○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의무교육 대상은 '25년 교육 결과 제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전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붙임2)

3 교육방법

1. 전문 또는 기관 강사교육 (붙임1)

외부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전문강사 확인방법

자살예방교육 의무
홈페이지 접속
(<http://esu.kfsp.or.kr>)



자살예방교육
안내로 이동



상단 강사찾기
(지역별, 교육권한별)

-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개발기관 직접 문의 후 강의 요청 필요)

* 등록교육 :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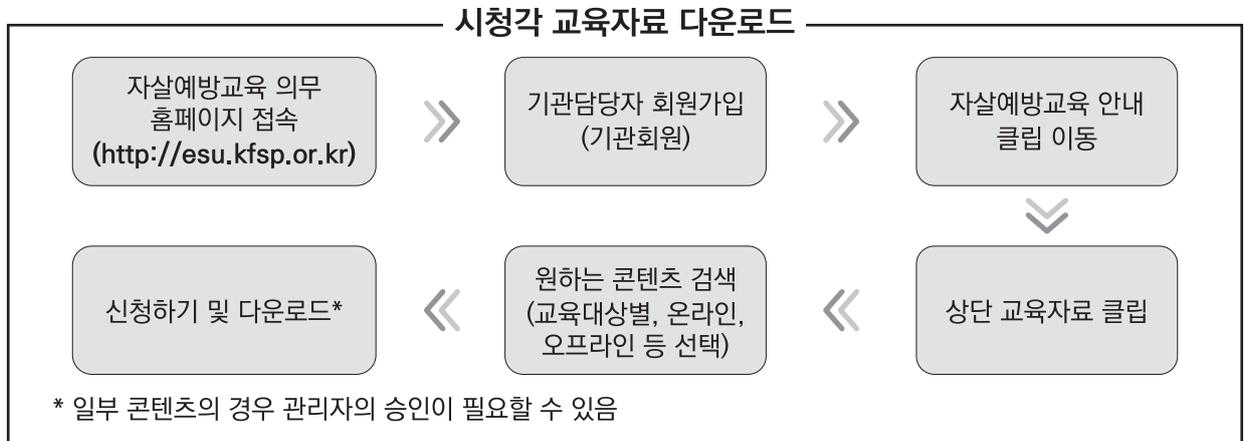
2. 자체교육

기관 내 내부직원이 시청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하거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직접 대면교육 실시

※ 자체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만 가능 (생명지킴이 대면교육은 외부강사 섭외 통해 진행)

(1) 시청각 교육

-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교육영상·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 담당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되는 지도서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진행(단순 영상 시청이 아닌 교육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유도)

(2) 사내강사 대면교육

- 기관장 또는 내부직원이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을 수료 후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2024년 사내강사 양성과정(안)〉

- (교육일정) 9월~11월 (총 2차 예정)
- (활동범위) 재직 중인 기관 및 단체에 한해 인식개선교육만 강의 가능
- (강사양성과정) 사전 온라인 이론교육(1시간)+대면 실습교육(5시간)
- (자격유지) 수료 후 자격 재직기간까지 (단, 매해 보수교육 수료 필요)

3. 온라인 교육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 교육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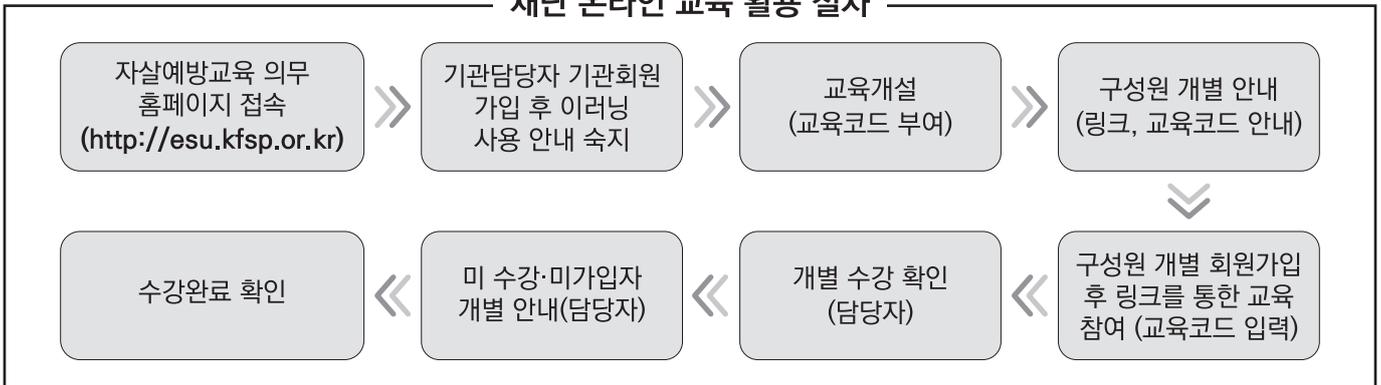
(1) 국가 공공교육 시스템 활용 (나라배움터 등)

- (교육대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및 소속 직원
- (교육절차)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각 기관별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접속 후 지정과목 수강

(2) 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

- (교육대상) 나라배움터 이용이 불가능한 기관 또는 소속직원
- (신청절차) 재단 담당팀(교육관리팀)과 사전 협의 후 사업장 전용 온라인 교육 페이지 개설

재단 온라인 교육 활용 절차



4 결과보고

- (제출방법) 각 조직의 본부, 중앙기관은 소속기관의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 후 일괄 시스템 입력 ☞ <https://edu.kfsp.or.kr>
- (제출기한) 각 조직의 본부, 중앙기관은 취합한 교육실시 결과를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입력
- (보고내용) '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보고 *교육 대상인원, 교육 이수인원

〈세부 결과보고 안내〉

1. 입법조직

- (보고대상)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
- (보고방식)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일괄 취합보고

▶ 입법지원조직(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각 기관별 개별 보고

2. 사법조직 *취합범위 참고1

- (보고대상)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원, 각급 법원 및 지방법원 및 지원
- (보고방식) 대법원, 각급법원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일괄 취합보고

▶ 「헌법재판소법」 및 동 법 제19조의4에 따라 설립된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 「법원조직법」 및 동 법 제7편에 따라 설립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 기관별 개별보고

3. 중앙행정조직 (부·처·청) *취합범위 참고1

- (보고대상)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보고방식) 19부 3처 18청은 소속기관 교육실시 결과를 일괄취합 보고

▶ 20개 청 중 2개청(경찰청 및 소방청) 제외
▶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각 기관별 개별보고

4. 국군 (육·해·공군)

- (보고대상) 「국군조직법」 제14조에 따른 각군본부, 및 제15조에 따른 각군부대와 기관
- (보고방식) 각군본부는 각군의 군사조직 및 지원시설(부대 및 기관)의 교육실시 결과를 일괄취합 보고

▶ 병사를 제외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등의 교육실시 결과보고

5. 경찰·소방 *취합범위 참고1

- (보고대상) 경찰청,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른 기관
- (보고방식) 각 청은 통계연보에 따른 소속기관 및 지방조직(기관)의 교육 실시 결과 일괄취합 보고

6.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포함)

- (보고대상) 광역시·도, 시·군·구 내 기관
- (보고방식) 상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기준) 하위 기관 교육 실시 결과 일괄취합 보고

- ▶ 읍·면·동 교육실시 결과는 시·군·구에서 일괄취합
- ▶ 자치구가 아닌 구는 상위 시에서 일괄 취합
- ▶ 교육행정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시에서 일괄 취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행정기관 등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 각 기관별 직군(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 및 모든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행정기관 등

①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분류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② 공공기관(당해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지정기관 기준),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설립현황 기준), 특수법인* 등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2 교육내용 및 횟수

-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의무교육 대상은 '25년 교육 결과 제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전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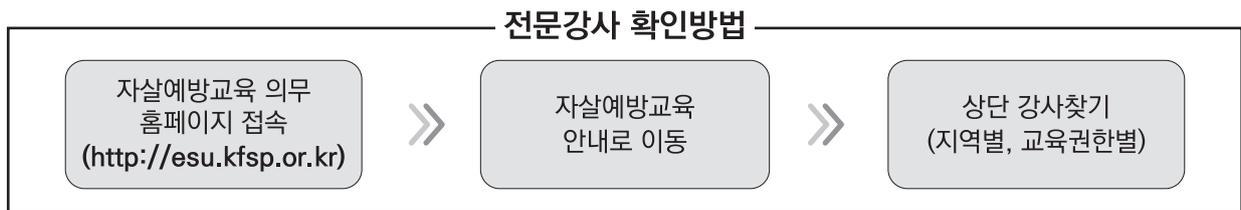
3

교육방법

1. 전문 또는 기관 강사교육 (붙임1)

외부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개발기관 직접 문의 후 강의 요청 필요)

* 등록교육 :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의 경우, 복지부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교육으로 인정됨)

2. 자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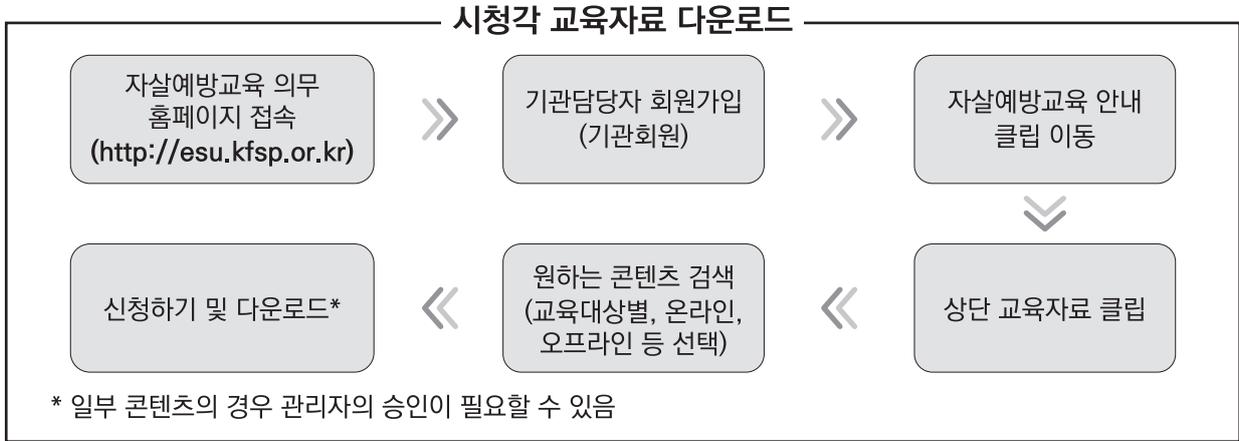
기관 내 내부직원이 시청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하거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직접 대면교육 실시

※ 자체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만 가능 (생명지킴이 대면교육은 외부강사 섭의를 통해 진행)

(1) 시청각 교육

-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교육영상·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 담당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되는 지도서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진행(단순 영상 시청이 아닌 교육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유도)



(2) 사내강사 대면교육

- 기관장 또는 내부직원이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을 수료 후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2024년 사내강사 양성과정(안)〉

- (교육일정) 9월~11월 (총 2차 예정)
- (활동범위) 재직 중인 기관 및 단체에 한해 인식개선교육만 강의 가능
- (강사양성과정) 사전 온라인 이론교육(1시간)+대면 실습교육(5시간)
- (자격유지) 수료 후 자격 재직기간까지 (단, 매해 보수교육 수료 필요)

3. 온라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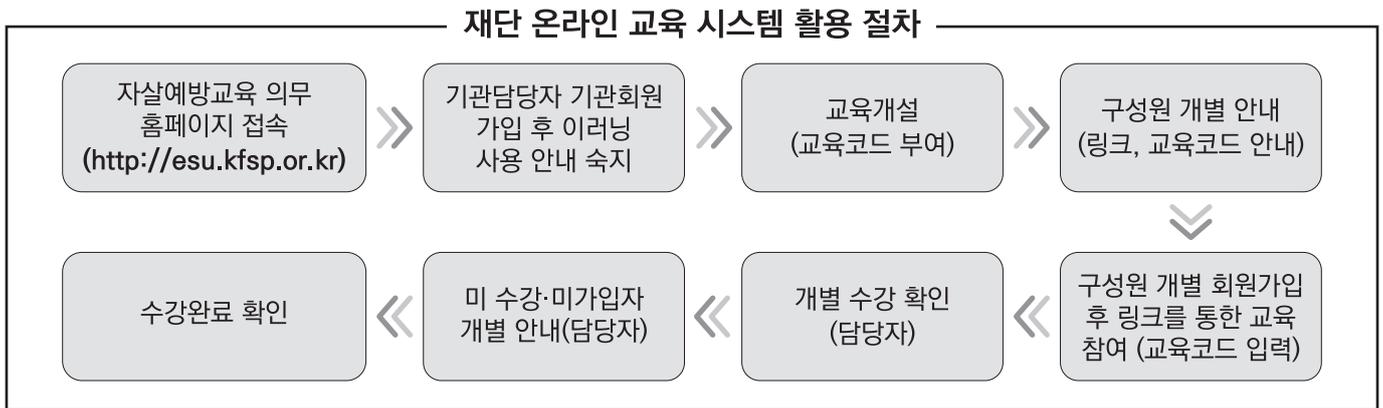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 교육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1) 공공 온라인 교육 시스템 등 활용

-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등 기관 내부 교육 시스템 (LMS) 활용 * <https://logodi.nhi.go.kr/> (공공기관 종사자 나라배움터)

(2) 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

- (교육대상) 기관단체 수장을 희망하는 기관
- (신청절차) 재단 담당팀(교육관리팀)과 사전 협의 후 사업장 전용 온라인 교육 페이지 개설



4 결과보고

- (제출방법) 각 기관의 소속된 모든 직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각 기관별 시스템 내 입력 ☞ <https://edu.kfsp.or.kr>
- (제출기한) 각 사업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 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보고내용) '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보고

* 교육명, 기관구분, 교육대상인원, 교육이수인원, 교육일시, 교육 방법, 강사명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복지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 사회복지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 내 직군(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제2항 제2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 제1항제2·3호)

<법률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유형>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수행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사, 치매안심센터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시설, 사회복지회관, 지역자활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결핵·한센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2 교육내용 및 횟수

-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 의무교육 대상은 '25년부터 교육 결과 제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전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붙임2)

<권장 교육 프로그램>

교육구분	교육 프로그램명
인식개선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공통교육 보고듣고말하기 교육 프로그램 이어준인 교육 프로그램
	분야별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기초편)

교육	아동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 (심화편)
	성인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 (심화편)
	노인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 (심화편)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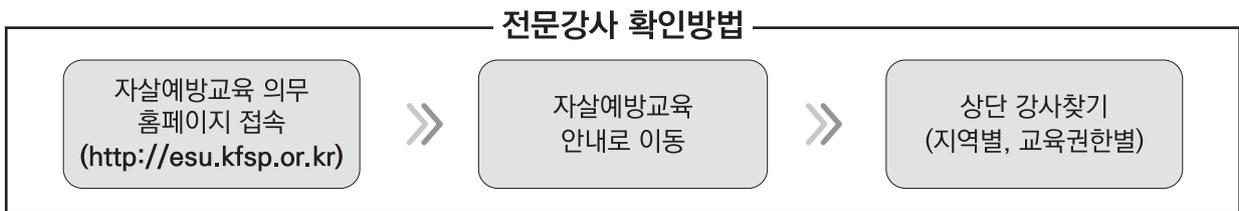
3 교육방법

○ 각 기관은 교육계획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4에서
따른 교육방법 자율적으로 운영

1. 전문 또는 기관 강사교육 (붙임1)

외부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개발기관 직접 문의 후 강의 요청 필요)

* 등록교육 :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 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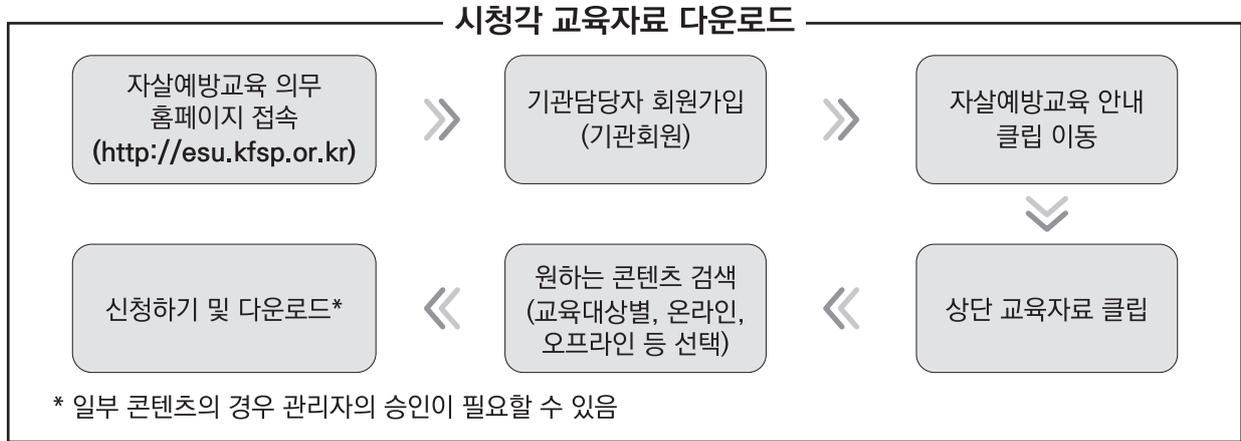
2. 자체교육

기관장 또는 내부직원이 시청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하거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직접 대면교육 실시

※ 자체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만 가능 (생명지킴이 대면교육은 외부강사 섭의를 통해 진행)

(1) 시청각 교육

-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교육영상·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 담당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되는 지도서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진행(단순 영상 시청이 아닌 교육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유도)

(2) 사내강사 교육

- 기관장 또는 내부직원이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을 수료 후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2024년 사내강사 양성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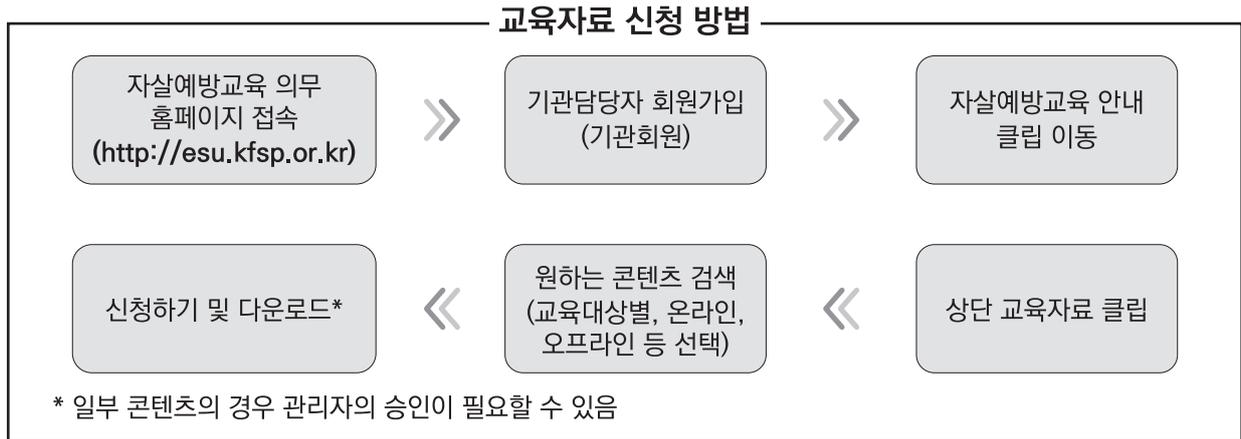
- (교육일정) 9월~11월 (총 2차 예정)
- (활동범위) 재직 중인 기관 및 단체에 한해 인식개선교육만 강의 가능
- (강사양성과정) 사전 온라인 이론교육(1시간)+대면 실습교육(5시간)
- (자격유지) 수료 후 자격 재직기간까지 (단, 매해 보수교육 수료 필요)

3. 온라인 교육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 교육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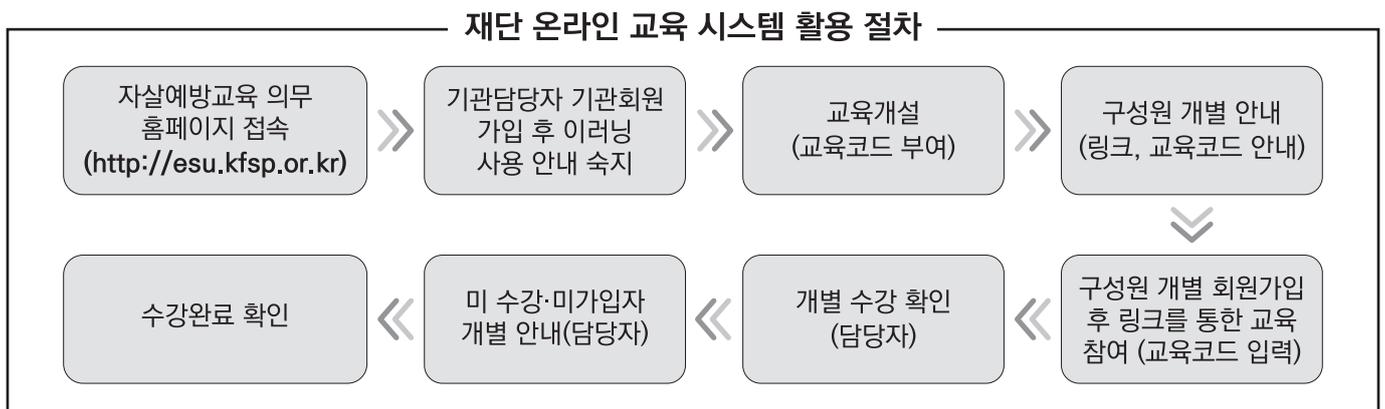
(1) 자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

- (교육대상) 자체 온라인 개별학습(LMS)이 가능한 기관
- (신청절차) 희망교육(인식개선 및 생명지킴이교육 중 택1) 선택 후 자체 시스템 탑재 후 교육 진행



(2) 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

- (교육대상) 단체수강을 희망하는 기관
- (교육절차) 재단 담당팀(교육관리팀)과 사전 협의 후 사업장 전용 온라인 교육 페이지 개설



4

결과보고

- (제출방법) 각 기관의 소속된 모든 직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각 기관별* 시스템 내 입력  <https://edu.kfsp.or.kr>
 - * 직급 및 직종 상관없이 교육보고
- (제출기한) 각 기관은 교육실시 결과를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보고내용) '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보고
 - * 교육명, 기관구분, 교육대상인원, 교육이수인원, 교육일시, 교육 방법, 강사명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학교장은 학생 및 소속 직원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이상 실시 (결과보고 생략가능)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4항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등)

2 교육내용 및 횟수

-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1차시 이상 교육 실시

☞ 전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붙임2)

3 교육실행 절차

1. 교육계획 수립하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연간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추진
 -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계획 등 교육부 지침에 따른 생명존중교육(연간 6차시) 연계하여 추진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따라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교과 교육 등을 이용하여 학생 자살예방교육 실시

- 각 시·도 교육청별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생명 존중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교육감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장은 ‘학교계획’을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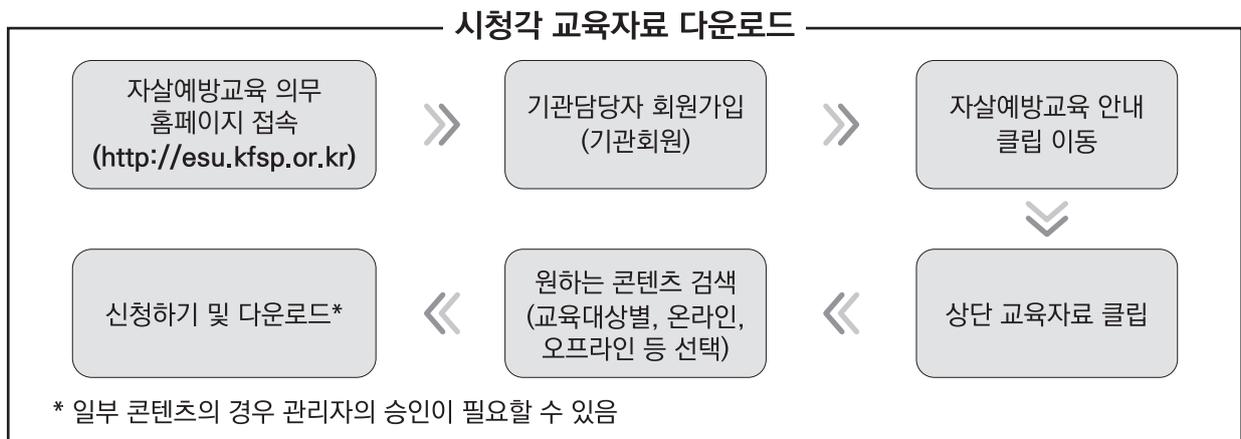
2. 교육방법 결정하기

- 학교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4에서 따른 교육방법 자율적으로 운영

- ▶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전문강사) 또는 교사가 직접 대면교육 권장
- ▶ 학급단위별 수업 실시 권고 (단순 카드뉴스, 가정통신문 등 배포·게시의 경우 교육 불인정)

(1) (교사 대면교육) 학교 내 교사에 의한 교육

- 복지부(재단) 시청각 교육자료(수업지도서) 활용: 수업 지도서는 학교 안전교육 표준안에 준하여 제작되었으며, 현행 교과목과 연계되어 수업 할 수 있도록 구성 (교사는 단순 영상시청이 아닌,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학습활동 지도 및 학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별 교육자료를 활용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및 시도교육청별 홈페이지 참고

(2) (외부 전문·기관강사 대면교육) (*붙임1)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개발기관 직접 문의 후 강의 요청 필요)

* 등록교육 :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교원 및 교직원 교육방법>

(1) 외부 강사 섭외 (붙임1)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개발기관 직접 문의 후 강의 요청 필요)

(2) 시청각교육

-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진행
 - 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장소에서 교육자료(교육영상)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 시청각교육은 별도 강사양성과정 없이 활용 가능

(3) 온라인교육

- 복지부(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 활용 <https://edu.kfsp.or.kr>

3. 결과보고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보고 생략 가능

부록

1

의무 교육대상

Q. 자살예방교육의 교육 대상은 누구이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자살예방법」 제17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노인복지시설
- ④ 사회복지시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등)

Q. 근로상황(휴직·이직·중도입사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대상은 직군(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기에, 휴직·중도 입사자 등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이직자의 경우 이전 기관에서 당해연도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 등 증빙 가능하다면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관 내 외국인 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내국인, 외국인, 직군(직급),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공무원 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모든 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Q.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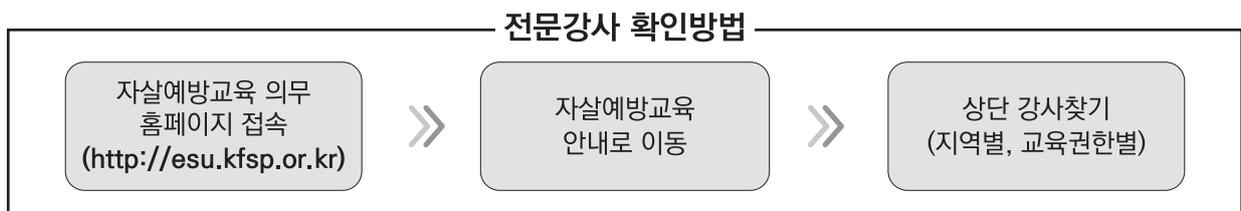
A. 자살예방 교육 미이행시 법적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각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육방법

Q. 재단 전문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복지부(재단)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강사를 섭외하시면 됩니다.



Q. 대면 혹은 시청각 교육 진행 시 수강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 및 수강자 상호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장소가 준비되어야 하며, PPT강의 혹은 영상 시청을 위한 기자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Q. 인터넷 교육은 어디서 수강할 수 있나요?

- A. ① 기관 내 LMS*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경우, 자체 시스템 내 복지부(재단) 교육자료를 탑재하여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② 기관 내 LMS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복지부(재단)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3

결과보고

Q. 교육실시 결과보고는 언제, 어디에 입력하면 되나요?

A. 자살예방교육 실시 결과보고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교육 시행 후, 2026년 1월 31일까지 <https://edu.kfsp.or.kr> 내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4

노력대상

Q. 노력 대상이란 누구를 지칭하나요?

A. 「자살예방법」 제17조제2항과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칭합니다.

Q. 노력 대상은 의무대상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노력대상 기관(단체)장이 판단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자살예방방법론에 의거하여 아래 기관에서 보급하고 양성된 강사에 한하여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관의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아래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 후 교육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근거: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양성된 전문강사

→ 전문강사 찾기 경로: ①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접속(edukfsp.or.kr)→ ② 자살예방교육 안내 → ③ 강사찾기

2. 등록교육 보유기관 → 세부내용은 각 개발기관 문의

	개발기관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1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gwmh.or.kr:446/	033-251-1970
2	경기도자살예방센터	https://www.mentalhealth.or.kr/	031-212-0437
3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gnmhc.or.kr/	055-239-1400
4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hmt.or.kr/	062-233-2468
5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gbcmhc.or.kr/	062-267-5510
6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www.gumimind.com	054-444-0199
7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www.bsmhc.com	051-246-1981
8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beautymind.or.kr	051-638-2662
9	서울시자살예방센터	http://www.suicide.or.kr/	02-3458-1000
10	성남시자살예방센터	https://www.smhc.or.kr	031-780-7000
11	수원시자살예방센터	http://m.csp.or.kr	031-214-7942
12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wjmhc.or.kr	063-262-3066
13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https://ispc.or.kr	032-468-9917
14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main.do	061-350-1700
15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jbmhc.or.kr/	063-251-0650
16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jejumind.or.kr/	064-717-3000
17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chmhc.or.kr/	041-633-9183
18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www.cbmind.or.kr	043-217-0597
19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hsmindestep.or.kr	031-305-5151
20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https://kpwee.kr/Center	053-326-9275
21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s://chingusai.net/xel/	02-745-7942
22	(주)CNS	http://www.crisisnego.co.kr/main	-

※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임

□ 학생 대상 교육자료 (54종)

① 복지부(재단) 교육자료 (7종)

대상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청각	온라인
초등저학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초등저학년)	40	○	○	
초등고학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초등고학년)	40	○	○	
중등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중등)	45	○	○	
고등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고등)	50	○	○	
중·고등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중학생용	45	○		○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고등학생용	45	○		○
	이어줍인(청소년용)	45	○		

②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면교육자료 (19종)

대상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초등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광역시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마음을 봄, 생명을 봄'
초등저학년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초등학교 저학년 ver.
초등고학년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초등학교 고학년 ver.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친구사이"
중고등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일반 2.0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중고등학교 ver.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친구사이"
중고등	경기도자살예방센터	학생자살사후중재 프로그램 M-love
		생명사랑 토티교실 3.0
		생명사랑 토티교실 게이트키퍼 ver.
		생명사랑 토티교실 자해 예방 ver.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 "안녕, 괜찮니?"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이어달리기(청소년용)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인드프렌즈’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생명톡톡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또래생명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나!! 우리학교 게이트키피어!’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I MY ME MINE’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피어 양성교육 ‘WHAT’S UP’

③ 민간 등 기관 개발 교육자료 (1종)

대상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중고등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④ 교육부· 시도교육청별 교육자료 (27종)

〈학생대상 생명존중 권장자료〉

대상	세부대상	교육명	게시처	
초등 (12종)	1~2학년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도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3~4학년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도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4~6학년	슬기로운 마음생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5~6학년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도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1~6학년		마음독감 예방접종	강원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영상 활용 안내서	경상북도교육청
			라이프 히어로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명존중교육 활동 자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영상 안내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중등 (6종)	1~3학년	MAP 학생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존중교육 활동 자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수업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 리터러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 토크아보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영상 안내서	
고등 (5종)	1~3학년	MAP 학생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수업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생명존중교육 활동 자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신건강 리터러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영상 안내서	
중·고등 (4종)	1~3학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자료	강원도교육청
		자아존중감과 회복 탄력성 교육영상 안내서	경상북도교육청
		라이프 히어로즈	서울특별시교육청
		Health 인(人) 원격 보건교육 : 8. 정신건강증진교육(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내 ‘학생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교육자료(‘23. 3.)’ 기준으로 분류함			

□ 성인(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교육자료 (총 42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9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청각	온라인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청년)	60	○	○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성인)	60	○	○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형	120	○		○
보고듣고말하기 2.0 노인편	60	○		○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60	○		○
보고듣고말하기 2.0 중장년편	60	○		○
이어줍인(성인용)	60	○		
이어줍인(직장인용)	60	○		
이어줍인(노인용)	60	○		

②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면교육자료 (28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일반 2.0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노년층 2.0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성인(청년) ver.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해U?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교사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자살예방 응급요원 교육 *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교육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 · 통장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세상살이」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남도 중·장년층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4050그대에게’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교육 ‘소중한 숨’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기본형]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단축형]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사랑톡톡65+’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이어달리기(성인용)
	생명이어달리기(노인용)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요즘어때?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구대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약국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노인생명존중교육 생명충전기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노인 우울 및 자살사고 경계선 집단프로그램 마음지팡이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양성교육 ‘이심전심’ (노인용)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행복키움 Thank You 프로그램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중·장년층)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노년층)

③ 민간 등 기관 개발 교육자료 (5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존중 부모교육 :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통일부 하나원, 한국자살예방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사용 보고듣고말하기(게이트키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돌봄
(주)CNS	자살시도 중재협상 프로그램

□ 보건복지기관 대상 교육자료 (총 14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13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청각	온라인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기초편)	120	○		○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심화편)	110	○		○
성인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심화편)	127	○		○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심화편)	100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의사용)	90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간호사용)	90	○		○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자살관련 교육(구급대원용)	120	○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90	○		○
장애인가족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90	○		○
정신장애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실무자용)	90	○		
정신장애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당사자용)	60			○
정신장애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당사자용)	60			○
알코올사용장애 대상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실무자용)	90	○		

②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면교육자료 (1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 [청소년 전담인력용]

□ 특수직군 대상 교육자료 (총 12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2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 청 각	온 라 인
응급의료종사자대상 자살관련 교육	120분	○		
연예 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	60분~120분	○		

② 시·도 및 민간기관 개발 교육자료 (10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한국자살예방협회, 육군본부	육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A
한국자살예방협회, 해군본부	해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N
한국자살예방협회, 해병대사령부	해병대를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ROKMC
한국자살예방협회, 공군본부	공군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공무원 동료 게이트키퍼 훈련 프로그램 뽐!뽐!뽐!(구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내근직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화재구조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구급편)
이지앤웰니스, 경찰청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전직원용)
이지앤웰니스, 경찰청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관리자용)

참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시행규칙 별도 규정 없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small>(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small>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small>(대통령령 제100000호, 7. 12 공포)</small>
<p>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p>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p>	<p>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p> <p>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p>

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진담공무원

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단체·단체·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단체·단체·시설 내에 게

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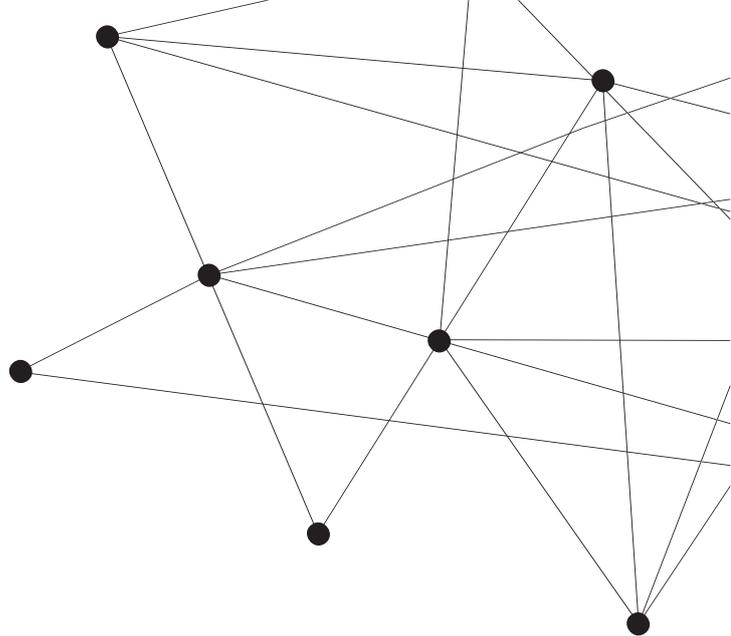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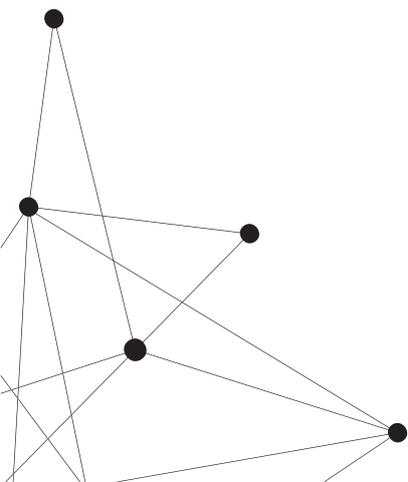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광역·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배포용

2024. 7.



주요변경사항

2024년 자살예방교육 주요 변경사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

- ### 〈 주요개정 내용 〉
- ❖ **자살예방교육 실시 규정**
 - 교육대상을 교육 의무대상과 노력대상으로 구분하여 교육실시 방법 규정
 - 교육 의무대상은 자살예방교육 인식개선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하여 매해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노력대상은 기관(단체)장 판단하여 교육실시 권고)
 - ❖ **교육 결과보고를 통해 의무교육 규정**
 -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 후 결과보고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 가능)
 - ❖ **학교(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의무 강화**
 - 기존 시행령에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
 - ❖ **의무교육에 따른 교육방법 시행령 내 규정**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결과보고 방법 및 일정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구분	개정법률 시행 전	개정법률 시행 후 ('24년 7월 12일 이후)
교육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제1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시행령 제10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③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④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p style="background-color: #ffe0b2; padding: 2px;">〈교육대상을 의무대상과 노력대상 구분〉</p> <p>✔ 〈의무대상〉 매해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③ 「초·중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④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hr style="border: 0.5px solid #ccc;"/>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관련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법 제17조 제1항제1·2·3호 ✔ 자살예방법 제17조 제4항 ✔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hr style="border: 0.5px solid #ccc;"/> <p>✔ 〈노력대상〉 매해 교육실시 권고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 ②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③ 「대안교육기관법」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hr style="border: 0.5px solid #ccc;"/>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2px;">〈관련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법 제17조제2항 ✔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구분	개정법률 시행 전	개정법률 시행 후 ('24년 7월 12일 이후)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4조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명존중의 중요성 ② 자살현상의 이해와 예방 ③ 자살위기자에 대한 상담 방법 ④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방법 ⑤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지원방법 ⑥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자살예방교육을 교육목표에 맞게 '인식개선 교육' 과 '생명지킴이 교육' 으로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②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③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 <생명지킴이 교육>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살문제와 현황 ②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 신호 ③ 자살위기 대응 기술 ④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p>
교육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 실시 횟수 신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실시기관은 매해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1 교육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p>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자살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및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 제단 '생명지킴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교육은 대면교육과 (실시간)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실시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법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교육은 집합(강사)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관련법률></p> <p style="text-align: center;">✓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p>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실시 결과는 교육실시기관이 직접 다음해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직접 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 제출 생략 가능)

<용어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자살예방교육” 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과 주변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돕는 “생명지킴이 교육” 을 말함
-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은 자살예방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단의 위원회를 말함
- “기관강사” 라 함은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양성된 강사를 말함(단, 예비·본인증 교육 프로그램 또는 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취득 받은 교육 프로그램에 한해 강사양성 가능)
- “전문강사” 라 함은 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말함
- “교육실시기관” 이라 함은 법 제17조에 정의한 교육의무 및 노력대상 기관을 말함

추진개요

1

자살예방교육 추진개요

1) 사업목적 및 근거

-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 및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발굴망을 구축하여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1-2-1-1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및 체계 마련’

<자살예방교육 개요>

- 교육대상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0조]

구분		대상
의무 대상	국가 등 공공기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학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등)
	보건복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②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30개 이상의 병상)
노력 대상	사업장	①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
	학교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②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 4조 비인가 및 「대안교육기관법」 제5조 등록기관 ※ 시·도교육청 통해 확인 가능)

- 의무대상 : 매해 1회 이상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 필수
- 노력대상: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의 판단하에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2제1· 2항]**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교육 등의 방법 등으로 실시

●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생 및 교원·교직원 등)에 한하여 결과제출 생략 가능)
-

2) 추진경과 및 지원현황

- 2013년~현재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강사양성과정 운영
- 2018년~2022년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생명지킴이 연 100만명 양성
- 2022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활성화 방안 및 효과성 연구 진행
-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생명존중인식 교육 의무화 및 체계 마련 추진 중
- 2023년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법안 통과 (7. 11 공포)
- 2023년~현재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2023년~현재 자살예방법 시행령 통과 및 의무교육 (7. 12~)

3) 운영체계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구분		역할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제도 운영 및 방향 수립 ● 점검 지침 마련
수행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전략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 교육실적 접수 및 시스템 관리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 기관강사 양성 및 관리 ● 교육대상기관 교육 지원

2 자살예방교육 사업안내

가 자살예방교육 계획 수립

1) 목적 및 원칙

- 전 국민 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추진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통해 자기이해와 도움요청 증대
 - 발달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교육 효과 증대
- 지역사회 인적 발굴망 구축을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지속 추진
 - 지역사회 통·반장, 지역 리더 등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네트워크 핵심그룹 생명지킴이로 양성
 -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료 및 상담·사회복지 분야)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고위험군 발견 및 전문기관 연계 향상

<참고. 자살예방교육의 근거 및 효과>

● 세계보건기구(WHO)

- 국가적 차원의 공중보건 및 공공정책에서 자살예방을 우선순위를 두고 심리·사회·문화적 측면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접근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자살에 대한 인식을 공중보건의 문제로써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WHO, 2014)
- 세계보건기구가 효과적인 주요 증거 기반 개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시한 LIVE LIFE(횡단적 기초 및 효과적 근거기반 개입)에서 자살예방 의무교육은 인식개선과 역량개발, 청소년의 생활기술 증진과 조기 식별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해당

● 미국질병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주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 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정책, 프로그램 및 실행을 위한 기술 패키지」 (Preventing Suicide: A Technical Package of Policies, Programs, and Practices, 2017)를 제공하여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이 중 “대처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교육(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육아 및 가족관계 프로그램 등)” 과 “고위험군 식별 및 지원(생명지킴이 교육, 위기개입 등)” 등이 포함됨

● 자살예방교육의 효과

- 자살예방교육은 기존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자살예방 개입 중 하나임 (Mann et al. 2005; Zalsmanetal. 2016; Mann et al., 2021)
- ‘24년 기준, 인증 교육 프로그램 중 연구를 통해 교육 효과를 검증한 프로그램 4종 (교육 후, 교육생의 지식, 기술,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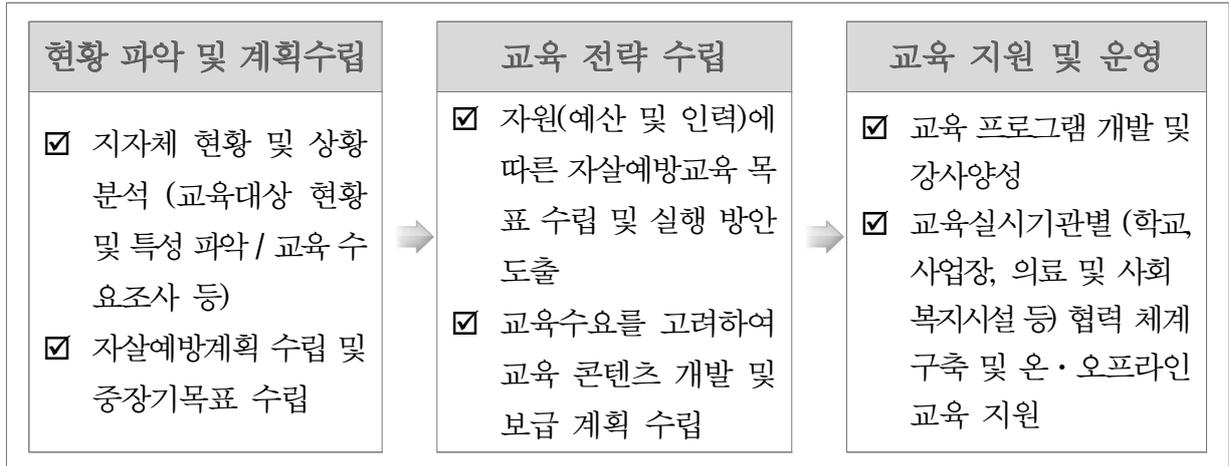
구분	연구대상자	프로그램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청소년(고등학생)	보고듣고말하기2.0 청소년(고등용)
	정신장애인 가족	정신장애인 자살예방교육 (가족용)
	일반성인	보고듣고말하기2.0 기본편(성인용)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사랑 툰툰교실 3.0

2) 자살예방교육 계획 수립 기본 방향

- 광역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자체별 교육대상 현황 및 특성 분석, 자살예방교육 전략 수립
 -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양성
 - 자살예방교육 지원 및 운영
 - 교육 홍보 및 우수기관 발굴

-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역 내 교육 수요파악 및 교육기관 협력 및 교육안내(홍보)
 - 교육대상 기관별 자살예방 인식개선 및 생명지킴이 교육
 - 생명지킴이 양성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자살예방교육 사업운영 절차>



나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 근거, 각 지자체별 예산 및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능

<기관유형별 추진절차>

구분	추진절차
<p>①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기관 (인증 외 교육 프로그램에 한함)</p>	<p>☞ 재단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통해 승인 후 자체 보급</p> <p>기관 → 재단 교육 프로그램 심사 신청서(붙임1) 제출</p> <p>↓</p> <p>재단 운영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심사*</p> <p>↓</p> <p>재단 → 기관 심사결과 전달(승인여부 및 검토의견)</p> <p>↓</p> <p>기관 승인 후 자체 보급 추진</p>
<p>② (예비·본) 인증 보유기관</p>	<p>☞ (기존과 동일) 인증기준에 준하여 자체 보급</p> <p>☎ 인증제도 문의 : 연구평가팀(02.3706.0571~4)</p>
<p>③ 재단 교육 프로그램 활용기관</p>	<p>☞ (기존과 동일) 재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전문강사 활동 (붙임3. 전문강사양성 안내 참고)</p>

※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프로그램은 심사 없이 자체 활용 가능

● 운영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심사

- (신청기간) 매 해 상·하반기 2회 *별도 공고예정
- (심사대상)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중 비인증 프로그램으로 향후 활용 계획이 있는 기관
- (신청절차) 공고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출내용) 공문, 교육 프로그램 심사 신청서, 신규개발 교육 프로그램 각 1부
- (심사방법) 교육 운영위원회(재단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

〈심사기준표(안)〉

구분	항목	주요 심사 항목	평가	
교육 과정 개발	정확성	▶ 활용한 자료의 출처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 최신자료를 활용하였습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전문성	▶ 관련 분야 전문가가 개발과정에 참여하였습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자료완성	▶ 교육 방식에 따라 필요자료가 마련되었습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 교육 방식에 따라 교육시간이 적절합니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교육내용	<input type="checkbox"/> 인식개선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자기이해와 돌봄 ▶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등	<input type="checkbox"/> 생명지킴이 ▶ 자살문제와 현황 ▶ 위험요인과 경고신호 ▶ 위기 대응 기술 등	법률에서 정한 교육내용 프로그램 반영 여부	

다 자살예방교육 보급

1) 기관강사 양성 및 관리

※ (예비·분)인증 또는 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교육에 한해 기관강사양성 가능
 ※ 별도 강사양성 없는 보급이 가능한 경우 ☞ 자체적으로 보급 기준 마련 후 보급

- 기관강사 양성
 - (운영주체) 인증 또는 위원회 승인 교육을 보유한 기관
 - (운영내용) 보유한 교육 프로그램별 기관강사 양성

교육생선발	•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 기관강사로 활동이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여 선발기준 마련 후 자체적으로 선발
교육과정	• 자체적으로 강사양성 교육 기획 및 운영 • 교육생 수준으로 고려하여 기관강사 활동에 필수적인 내용 포함하여 운영
교육방법	• 자율적으로 운영 (단, 강의실습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 권고)

- 기관강사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필요 시 운영)

- 양성된 기관강사의 자격 유지 및 관리 등 강사활동과 관련된 기준 마련
- 강사의 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 기획 및 운영

2) 교육지원

※ 교육실시기관의 강의 요청에 따라 대면교육 등 지원 가능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지원

● 강사 대면교육

-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회의 등)을 지원

- ☞ **기관강사** : 광역·기초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양성된 강사 (단, 강사양성 범위는 예비·본인증 교육 또는 위원회의 승인 받은 교육에 한함)
- ☞ **전문강사** : 복지부(재단)의 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재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강사
 - ※ 전문강사는 생명지킴이 2종(보고듣고말하기, 이어줌인) 및 인식개선 4종(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강의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강사 자격 및 경력에 따라 아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프로그램명	전문강사 접근권한
▶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교육 의무 홈페이지 접속 https://edu.kfsp.or.kr ↓ 강사공간 클릭 이동 ↓ 전문강사 교육자료 클릭 및 다운로드
▶ 청소년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 성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 장애인가족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 정신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 알코올사용장애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 온라인 교육(LMS)

- 복지부(재단) 교육 운영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교육 수강 가능

대상	기관명	교육 운영 홈페이지 주소
모든 교육 대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edu.kfsp.or.kr

※ 교육실시 결과보고는 ‘25년 교육실시 결과부터 보고하며, 교육실시기관이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에 직접입력하는 것이 원칙

- 소속된 모든 직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자살예방교육시스템 결과보고 내 입력

☞ 자살예방교육시스템 <https://edu.kfsp.or.kr>

- ‘25년 교육실시 결과를 ‘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시스템에 입력 완료
- 결과보고 내용 : 교육일시, 교육명, 강사명, 전체 근로자 인원, 교육수료 인원

※ 교육실시 결과보고는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해 1월까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 교육실시기관별 결과보고 방식 상이함

① 일괄 취합보고: 중앙단위 기관에서 일괄취합 후 통합입력

구분		결과보고 입력 방법
의무대상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교육실시 결과 및 각 소속기관 교육실시 결과를 중앙단위 기관에 교육실시 결과 취합 후 통합입력
	지방자치단체	자체 및 관할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시 결과 취합 후 통합 입력 (시, 군, 구 기준으로 취합)
	국방, 경찰, 소방	본부(경찰청, 소방청, 각 군별 본부) 이하 기관 모든 교육실시 결과 취합 후 통합입력
	초 중 고등학교 등	단위학교-지원청-교육청 교육실시 결과 취합 후 통합입력 (학교장의 판단하에 학생 및 교원·교직원 결과보고 생략가능)

② 단위기관별 보고: 각 기관별 교육실시 결과 직접보고

구분		결과보고 입력 방법
의무대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각 기관별 교육실시 결과를 자살예방교육시스템 결과보고 내 필수 입력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노력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기관(단체)장 판단하여 교육실시 결과를 자살예방교육시스템 결과보고 내 입력
	대학교, 대안교육기관	

부록

Q. 자살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인가요?

A. 네, 의무교육입니다. ‘24. 7. 12. 자살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의무교육: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Q. 의무대상과 노력대상의 세부 종류 외에도 다른 것이 있나요?

A. 네, 각 교육대상별 세부 종류 외에도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의 의무 여부가 다릅니다.

- ① **의무대상**: 「자살예방법」 제17조에 의거한 교육 의무대상은 **매해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② **노력대상**: 「자살예방법」 제17조 및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한 교육 노력대상은 별도의 의무 없이, 각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의 판단**하에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Q.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자살예방교육 미이행 시 **법정 제재** 규정은 없으나, 「자살예방법」 제17조에 의거, 각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교육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Q.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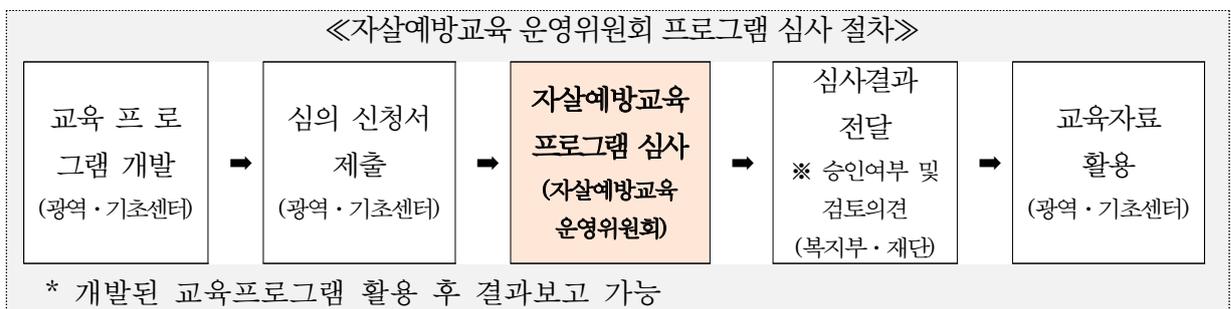
A.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은 인식개선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심리·사회적 위기와 자살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주요내용》

핵심주제	주요내용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①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 인식 ② 자살에 대한 이해(삶과 죽음의 의미, 자살로 삶을 마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 ③ 생명존중과 생명경시 활동의 이해와 실천 등
자기이해와 돌봄	① 생애주기별 과업 및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 ② 보호요인 중심(다양한 감정 다루기,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및 소통방법 등)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①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편견과 낙인 줄이기) ②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 ③ 적절한 도움 요청 방법 등

Q. 광역(기초)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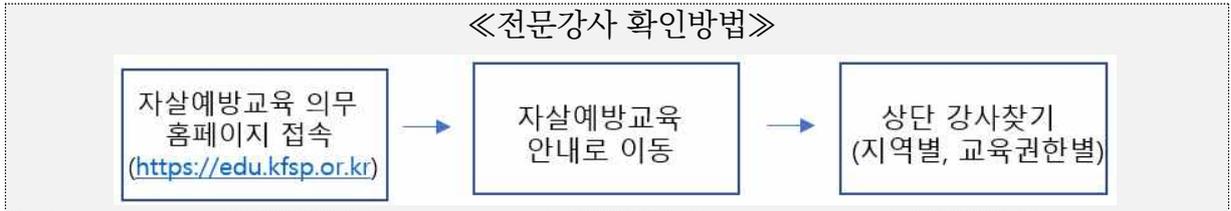
A. ① 예비·본인증 프로그램은 인증기준에 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 외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 심사’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법 개정 이후) 강사의 종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강사의 종류는 총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① **전문강사**: 복지부(재단)의 전문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로, 재단의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관강사**: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등록교육 :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자살예방교육 강사 분류표》

구분	전문강사	기관강사
양성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광역·기초센터
강의범위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광역·기초센터에서 개발한 교육으로 인증 또는 운영위원회 승인 교육
강사과정	3일 과정	기관 자체 기준
자격유지	수료 후 3년 까지	
강사정보	교육 운영 홈페이지 (https://edu.kfsp.or.kr)	각 기관 홈페이지

Q. (법 개정 이후) 교육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A.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실시기관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센터에 강의 요청 시, 교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 또는 교육 담당자가 사업장 내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① 교육 담당자는 **전문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직접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② 별도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하지 않고 **복지부(재단)의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이 가능하며, ③ **복지부(재단) LMS(온라인 교육 시스템)**를 활용하여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Learning Management System :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 교육

Q. 광역(기초)센터 종사자도 교육대상인가요?

A. 네, 교육대상입니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의 광역(기초)센터는 **교육 노력대상**으로 **센터장의 판단**하에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확인방법》

- 사업장 내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수로 산정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인원수 (보수총액 신고한 근로자)’ 확인 가능

☞ 확인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Q. 광역(기초)센터 종사자는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인식개선 교육 및 생명지킴이 교육 모두 수강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 및 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표)에 안내되어 있는 교육 수강을 권고합니다.

《권장 프로그램》

활용대상	프로그램명
공통	▶ 성인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생명지킴이 교육)
희망교육 선택	▶ 청소년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 성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 노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 장애인가족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 정신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 알코올사용장애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Q. 교육 결과보고는 누가, 어떻게 보고하나요?

A. 결과보고는 **교육실시기관이 직접**보고 해야 합니다. 이에 **센터 교육실시 결과(센터 내 근로자 교육실시 결과)**만 자살예방교육시스템(<https://edu.kfsp.or.kr>)을 통해 결과보고 하시면 됩니다.

☞ 센터는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해 1월까지 교육실시 결과를 직접 입력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붙임1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심사 신청서

※ 작성자 :		※ 연락처 :	
1. 교육명			
2. 교육구분		<input type="checkbox"/> 인식개선 교육	<input type="checkbox"/> 생명지킴이 교육
3. 주제별 세부내용		교육내용 *시행령 제10조의2	교육 자료의 해당 페이지 (자료형태가 영상인 경우 해당 교육시간 작성)
택 1	인식개선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예. ppt 1~3번 슬라이드 예. 영상 01:00~05:20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문제와 현황 위험요인과 경고신호 위기대응 기술 등	
4. 교육 운영 ※ 모두(중복) 체크		교육 방법 및 시간	
		<input type="checkbox"/> 시청각교육 _____분	<input type="checkbox"/> 영상 <input type="checkbox"/> 강사용지도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__차시 총__분	<input type="checkbox"/> 영상 <input type="checkbox"/> 강의PPT <input type="checkbox"/> 강사용지도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5. 교육 대상 ※ 모두(중복) 체크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input type="checkbox"/> 청년 (19세~34세)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input type="checkbox"/> 중장년 (35세~64세)
		<input type="checkbox"/> 중,고등학생	<input type="checkbox"/> 노인 (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특정집단 (예 장애인, 소방직군 등)	
6. 교육 보급 계획		<input type="checkbox"/> 강사양성 후 강사에 한해 보급 <input type="checkbox"/> 별도 강사양성 과정 없을 시 보급(공유) 방법 작성 ()	
7. 온라인교육 운영 ※ 해당 시 체크		<input type="checkbox"/> 교육홈페이지(LMS)	홈페이지 : 이용대상 :
8.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여한		소속 및 직위	성명
		예. 00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예. 000
		역할	예. 자문
9. 교육 자료 제출(온라인 교육의 경우 url 작성) :			

□ 학생 대상 교육자료 (54종)

① 복지부(재단) 교육자료 (7종)

대상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청각	온라인
초등저학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초등저학년)	40	○	○	
초등고학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초등고학년)	40	○	○	
중등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중등)	45	○	○	
고등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고등)	50	○	○	
중·고등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중학생용	45	○		○
	청소년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고등학생용	45	○		○
	이어줍인(청소년용)	45	○		

②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면교육자료 (19종)

대상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초등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광역시 초등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마음을 봄, 생명을 봄’
초등저학년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초등학교 저학년 ver.
초등고학년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초등학교 고학년 ver.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친구사이”
중고등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일반 2.0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중고등학교 ver.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프로그램 “친구사이”
중고등	경기도자살예방센터	학생자살사후중재 프로그램 M-love
		생명사랑 토티교실 3.0
		생명사랑 토티교실 게이트키퍼 ver.
		생명사랑 토티교실 자해 예방 ver.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프로그램 “안녕, 괜찮니?”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이어달리기(청소년용)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마인드프렌즈’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생명톡톡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또래생명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나!! 우리학교 게이트키피어!’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I MY ME MINE’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피어 양성교육 ‘WHAT’S UP’

③ 민간 등 기관 개발 교육자료 (1종)

대상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중고등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존중교육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④ 교육부· 시도교육청별 교육자료 (27종)

〈학생대상 생명존중 권장자료〉

대상	세부대상	교육명	게시처	
초등 (12종)	1~2학년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도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3~4학년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도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4~6학년	슬기로운 마음생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5~6학년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도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1~6학년		마음독감 예방접종	강원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자료 영상 활용 안내서	경상북도교육청
			라이프 히어로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명존중교육 활동 자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영상 안내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중등 (6종)	1~3학년	MAP 학생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존중교육 활동 자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수업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정신건강 리터러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정신건강 톺아보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영상 안내서	
고등 (5종)	1~3학년	MAP 학생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수업꾸러미	전라남도교육청
		생명존중교육 활동 자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신건강 리터러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영상 안내서	
중·고등 (4종)	1~3학년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자료	강원도교육청
		자아존중감과 회복 탄력성 교육영상 안내서	경상북도교육청
		라이프 히어로즈	서울특별시교육청
		Health 인(人) 원격 보건교육 : 8. 정신건강증진교육(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내 ‘학생 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교육자료(‘23. 3.)’ 기준으로 분류함			

□ 성인(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교육자료 (총 42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9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청각	온라인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청년)	60	○	○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성인)	60	○	○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형	120	○		○
보고듣고말하기 2.0 노인편	60	○		○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60	○		○
보고듣고말하기 2.0 중장년편	60	○		○
이어줍인(성인용)	60	○		
이어줍인(직장인용)	60	○		
이어줍인(노인용)	60	○		

②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면교육자료 (28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일반 2.0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노년층 2.0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성인(청년) ver.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해U?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교사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자살예방 응급요원 교육 *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교육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 · 통장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세상살이」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남도 중·장년층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4050그대에게’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교육 ‘소중한 숨’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기본형]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단축형]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사랑톡톡65+’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이어달리기(성인용)
	생명이어달리기(노인용)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요즘어때?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구대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약국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노인생명존중교육 생명충전기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노인 우울 및 자살사고 경계선 집단프로그램 마음지팡이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양성교육 ‘이심전심’ (노인용)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행복키움 Thank You 프로그램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중·장년층)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노년층)

③ 민간 등 기관 개발 교육자료 (5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존중 부모교육 :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통일부 하나원, 한국자살예방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사용 보고듣고말하기(게이트키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돌봄
(주)CNS	자살시도 중재협상 프로그램

□ 보건복지기관 대상 교육자료 (총 14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13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 청 각	온 라 인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자살예방교육(기초편)	120	○		○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심화편)	110	○		○
성인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심화편)	127	○		○
노인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자살예방교육(심화편)	100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의사용)	90	○		○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간호사용)	90	○		○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자살관련 교육(구급대원용)	120	○		
장애인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90	○		○
장애인가족 관련 종사자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90	○		○
정신장애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실무자용)	90	○		
정신장애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당사자용)	60			○
정신장애인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당사자용)	60			○
알코올사용장애 대상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실무자용)	90	○		

②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면교육자료 (1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전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 [청소년 전담인력용]

□ 특수직군 대상 교육자료 (총 12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2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 청 각	온 라 인
응급의료종사자대상 자살관련 교육	120분	○		
연예 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	60분~120분	○		

② 시·도 및 민간기관 개발 교육자료 (10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한국자살예방협회, 육군본부	육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A
한국자살예방협회, 해군본부	해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N
한국자살예방협회, 해병대사령부	해병대를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ROKMC
한국자살예방협회, 공군본부	공군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공무원 동료 게이트키퍼 훈련 프로그램 뽐!뽐!뽐!(구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내근직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화재구조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구급편)
이지앤웰니스, 경찰청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전직원용)
이지앤웰니스, 경찰청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관리자용)

붙임3 전문강사 양성과정 안내

가. 운영절차

신청접수	교육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과정수료
교육센터접수 (회원가입 필수)	내·외부 평가위원	1. 사전 온라인교육 (4시간) 2. 집합교육 (3일 과정, 18시간)	자격 취득

나. 신청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http://edu.kfsp.or.kr>)

구비서류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 강의활동계획 작성 시 <u>자살예방교육(인식개선, 생명지킴이 교육)</u> 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하며, 타인의 자료를 도용하거나, 유사하게 작성한 경우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
	강의시연 영상 (mp4, 3분 내외)	교육영상 촬영 후 영상파일 온라인 제출 ※ 재단에서 사전에 제공하는 교육자료(강의 스크립트) 활용(그 외 불인정 처리) ※ 신청자 본인이 직접 강의하는 영상에 한하며, 기준(3분 내, mp4 파일)에 준하여 제출 필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해 제출	경력증명서	모든 추가서류는 1개의 압축파일로 온라인 업로드 ※ <u>경력인정범위</u> : 사회복지, 심리, 상담, 의학, 간호, 교육 등에 한함
	국가(공인) 자격증	※ <u>국가(공인)자격증 범위</u> :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등에 한함

다. 선발절차

- (선발방식) 적격심사 후 선발기준에 따라 정원 내 선발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지원자 중 고득점자순 선발

※ <평가항목> 지원동기, 강의활동 계획, 관련경력, 관련자격, 강의력 평가 등

라. 결과안내

- (선정결과) 일정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내 공지 및 개별 알림톡 발송
* <홈페이지 경로> 대면교육 -> 강사양성교육 -> 신청내역(선정, 미선정으로 표기)

3. 교육과정

교육 과정		강의 주제	시간
온라인 교육 (4시간)		생명지킴이교육 (보고듣고말하기2.0 기본편)	2시간
		청년·성인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 소개 및 활용	1시간
		아동·청소년 인식개선 프로그램 소개 및 활용	1시간
대 면 교 육	기본소양 교육 (7시간)	자살의 이해, 자살예방사업 정책 및 지원체계	2시간
		아동·청소년, 청년, 성인 자살의 특징	3시간
		자살에 대한 나의 태도점검	2시간
	강의실전 교육 (11시간)	(보고듣고말하기2.0) 강의실습 및 모의연습	5시간
		인식개선 교육 이해 및 활용	3시간
		생명지킴이교육 콘텐츠 및 활용	1시간
		초등학생 대상 교육 전략	1시간
		직장인 대상 교육전략	1시간

*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교육 과목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자격 유지기간)

* 교육과정 수료(자격취득)일로부터 만 3년인 12월 31일까지 유효

예) '24년 8월 전문강사 수료 시, ' 27년 12월 31일까지 자격 유지

- (자격 유지조건) 유지기간 내 교육실적 6회 및 보수교육 1회

* 강사 자격이 만료되기 전 실적 및 보수교육을 통해 강사자격 갱신

붙임4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안내

□ 추진배경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전반적 운영 및 관리시스템 필요

□ 추진개요

○ 구축개요

- (시스템주소) <https://edu.kfsp.or.kr>
- (안내페이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안내, 강사정보 제공, 교육자료 안내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24.4.30 오픈)
-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 강사양성교육 신청, 강사보수교육, 실무자교육 신청 등 기능 제공 ('24.6.12 오픈)
- (강사공간) 강사 자격관리, 강사자료 다운로드, 강사 휴직신청, 강사활동신청 등 기능 제공 ('24.8.12 오픈예정)
- (결과보고) 의무대상 기관의 교육실시 결과보고 기능 ('24.10.12 오픈예정)

○ 구축 이미지



참고1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자살예방방법론에 의거하여 아래 기관에서 보급하고 양성된 강사에 한하여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관의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아래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 후 교육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근거: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양성된 전문강사

→ 전문강사 찾기 경로: ①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접속(edukfsp.or.kr)→ ② 자살예방교육 안내 → ③ 강사찾기

2. 등록교육 보유기관 → 세부내용은 각 개발기관 문의

	개발기관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1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gwmh.or.kr:446/	033-251-1970
2	경기도자살예방센터	https://www.mentalhealth.or.kr/	031-212-0437
3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gnmhc.or.kr/	055-239-1400
4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hmt.or.kr/	062-233-2468
5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gbcmhc.or.kr/	062-267-5510
6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www.gumimind.com	054-444-0199
7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www.bsmhc.com	051-246-1981
8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beautymind.or.kr	051-638-2662
9	서울시자살예방센터	http://www.suicide.or.kr/	02-3458-1000
10	성남시자살예방센터	https://www.smhc.or.kr	031-780-7000
11	수원시자살예방센터	http://m.csp.or.kr	031-214-7942
12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wjmhc.or.kr	063-262-3066
13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https://ispc.or.kr	032-468-9917
14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main.do	061-350-1700
15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jbmhc.or.kr/	063-251-0650
16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jejumind.or.kr/	064-717-3000
17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chmhc.or.kr/	041-633-9183
18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www.cbmind.or.kr	043-217-0597
19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hsmindestep.or.kr	031-305-5151
20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https://kpwee.kr/Center	053-326-9275
21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s://chingusai.net/xel/	02-745-7942
22	(주)CNS	http://www.crisisnego.co.kr/main	-

※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임

참고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시행규칙 별도 규정 없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00000호, 7. 12 공포)
<p>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

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
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 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
사자

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
·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
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
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
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살문제와 현황
 -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
시해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 · 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 · 단체 ·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 · 단체 · 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 · 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 ·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